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신고서 [ ]통보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반출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판매·반출장소	반출연월일
반입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②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입장소	자동차등록연월일

## 면세대상물품명세

차종	수량	배기량	반출가격	세율	면제세액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연식	
면세사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장애등급	장애급	중고차량 여부	여부	기타사항	
친환경차 여부 및 종류 (O 표시)		해당: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미해당: (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3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였음을(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세관장

직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p>신고인 제출서류</p>	<p>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다자녀양육자가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세대 분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다자녀양육자가 승용차에 대해 면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만 해당합니다)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제4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없음</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